

지사 ↔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 간
성과 계약서

2020. 2. .



제 1 장 총 칙

제 1 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 보수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원장이 성과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장의 책임경영을 보장하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의 경영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계약의 체결) ① 도지사와 원장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계약서에 각각 자필 서명 날인함으로써 이 계약이 성립된다.



② 이 계약의 당사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의 상대방에게 이 계약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3 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이 계약은 전항의 계약기간중이라 하더라도 원장의 사임 또는 해임,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과 동시에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원장의 권한과 책임) ① 원장은 연수원의 최고경영자로서 연수원을 대표하며 제반 경영활동을 통할하고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원장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연수원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가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원장은 법, 조례, 정관과 제 규정 및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의무를 지며, 제7조에서 정한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 5조(임기 중 겸직제한 등) ① 원장은 재임하는 동안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장은 재임 중에는 물론 퇴임 후에도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알게 되었거나 취득한 연수원의 기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기밀을 이용하여 연수원의 이익에 상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원장은 제2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6조(의원면직 제한) 도지사는 원장의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내부 감사부서 및 외부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징계위원회 등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 장 경영목표 및 경영성과 평가

제 7 조(경영목표) ① 원장이 임기 중 달성을하여야 할 경영목표는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이하 “경영평가”라 한다) 지표항목으로 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사업년도 중에 임기의 만료 등의 사유로 원장이 교체될 시에는 후임자는 전임자의 경영목표를 승계한다.

제 8 조(경영실적 보고) 원장은 매년 경영목표에 대한 당해연도 경영목표 이행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년도 4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행실적보고서 제출은 경영평가에 따른 자료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9 조(성과평가) ① 원장의 경영목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이하 “성과평가”라 한다)는 도지사가 행하며, 그 평가는 경영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영평가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조(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① 원장의 성과평가는 다음연도 성과급 및 기본연봉에 반영한다.

② 도지사는 원장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임기만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연임시키거나 임기 중이라도 해임을 건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며, 경영평가 결과 D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해임할 수 있다

③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2인 이상의 원장이 재임한 경우의 성과금은 개인 공헌도에 따라 배분하며, 그 기준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연봉조정과 연임 또는 해임조치는 재임 중인 원장에만 적용한다.

제 3 장 보수 및 복리후생

제 11 조(보수체계) 원장의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급, 부가급여 및 퇴직금으로 하며 그 지급시기와 방법은 이 계약서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연수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 조(기본연봉) ① 원장의 임기 중 기본 연봉액은 65,600,000원으로 하며 매월 12분의 1씩 연수원의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원장이 임기 중 해임되거나 임기만료 또는 사망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퇴임하는 경우에 해임 또는 퇴임 일이 속하는 월의 기본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원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원장의 기본연봉을 삭감할 수 있다.

제 13 조(성과급) ① 원장의 성과급은 도지사가 정하는 지급률에 연봉월액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원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달리 지급하며, 그 기준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② 성과급 지급 시기는 성과급 지급률이 확정 통보된 이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원장이 사업연도 중에 퇴임하는 경우에는 퇴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당해 사업연도의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된 후 확정된 성과급을 퇴임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원장이 성과계약서 제9조, 제10조 또는 정관,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와 성과계약서 제6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의 비리 및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에는 도지사는 원장의 성과급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 14 조(보수 지급후의 조정) ① 원장에게 성과급 및 연봉 등 보수를 지급한 이후에 조세환급, 오류의 발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보수 지급 금액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의 보수 지급 시에 이를 가감 조정한다.

② 원장이 중도에 퇴임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서 가감 지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가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수원에서 퇴임한 원장에게 추가로 지급하고, 감산 지급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퇴임한 원장으로부터 그 금액을 반환 받아야 한다.

제 15 조(퇴직금) ① 퇴직금은 원장이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재임기간 1년에 대하여 1개월분의 월평균 보수로 한다.

② 퇴직금 지급의 월평균 보수 산정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기본연봉, 부가급여(가족수당 제외)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과 최종 1년간 지급된 성과급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재임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1년 미만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한다.

④ 기타 퇴직금과 관련하여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연수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16 조(복리후생 등) ① 연수원에서는 원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한다.

② 원장의 휴가, 의료, 보건관리, 기타 비금전적 복리후생적 혜택은 연수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장 기 타

제 17 조(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 ① 이 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당사자의 요청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 또는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를 변경해야 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 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하는 경우
3.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감사 결과 통보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권고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경영목표 및 계약내용의 변경은 이사회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18 조(계약의 해석) 이 계약의 용어 및 계약내용에 관한 해석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원장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도지사의 해석에 의한다.

제 19 조(권리의 귀속) 원장이 재임기간 중 업무와 관련하여 개발한 발명품, 특허권, 등록상표, 아이디어 및 기타의 모든 지적재산권은 연수원에 귀속되며, 원장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못한다.

제 20 조(세금) 원장에게 지급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는 제반 세금과 공과금은 원장에게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서 원천징수 한다.

제 21 조(계약서의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계약당사자가 1부씩 보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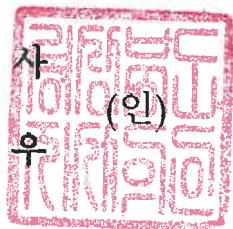


지사와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장은 위 계약서의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함.

2020. 2.



지
이
철



(사)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원장 권태

